



발행일 2020년 06월 16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



현안분석

위치정보추적수사 현황과 개선방안

박혜림*

- 01 I. 서론
- 02 II. 위치정보추적수사 현황
- 07 III. 위치정보추적수사 관련 쟁점사항
- 11 IV. 개선방안
- 15 V. 결론

요약

□ 위치정보추적수사는 통신 및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할 수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함

- 헌법재판소는 기지국 수사는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으나 과잉 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음
- 대상자의 사생활의 보호 및 정보자기결정권 측면에서 위치정보추적수사의 근거법률인 「통신비밀보호법」이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음

□ 현행 기지국 수사의 폐해,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의 남용,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장기간 수집 및 통지의무 실효성 미비와 같은 쟁점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위치추적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위치추적 방법 및 기간에 따라 요건을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함
- 기지국 수사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GPS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섭시키되, 수집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함
-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의 기간 제한을 두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수집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보다 실질화하는 방안이 필요해보임

* 정치행정조사실
 법제사법팀 입법조사관, 법학박사
 02-6788-4542
 mettew@assembly.go.kr

I. 서론

- 다양한 최신장비 및 기술의 상용화로 인해 위치정보추적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도 필수적임
 - 최근 코로나 사태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침을 두고 있음
 - 감염병 예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안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병 환자등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감염자의 동선 공개 시 익명·가명 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배포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
 - 범죄수사 역시 이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GPS추적기 활용, 휴대전화 위치정보추적, 기지국 수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위치정보를 얻어 이를 범죄수사 및 증거 수집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 이러한 위치정보추적수사는 통신 및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함²⁾
-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28일,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³⁾
 -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헌법 제12조제3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강제처분의 특수성, 그 강제처분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법 현실,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근거를 제시함
 - 다만 수사기관의 위치정보 추적 자료 제공의 필요성만으로 강제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과잉입법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여, 처분 대상범죄를 한정하거나 요건을 강화하고 적법절차원칙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봄
-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을 받아들여 2019년 11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이 일부개정된 바 있음⁴⁾
 -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목적이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고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⁵⁾ 수사의 경우, 필요성 이외에 보충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대상자에게 추적된 사실을

1) 위치정보 추적 방법은 크게 발신기지국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실시간 GPS위치정보를 추적하는 것으로 나뉘어지는데, 발신기지국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에 통신확인사실자료를 요청하는 것과 기지국 수사가 있고 실시간 GPS위치정보를 추적하는 방법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시키는 것과 가상 기지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2) 이헌재, 「독일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추적수사와 당사자에 대한 통보제도」, 법조 제68권 제4호, p499

3) 헌법재판소 2018.6.28. 선고 2012헌마191,550(병합)

4) 의안번호 2023981

5)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위치기반서비스에 대하여 “이동 중에 있는 사용자가 그들의 지리적 위치 소재나 알려진 존재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기반 서

통지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 그러나 위치정보수집을 영장의 대상으로 보는 해외 법원의 판결들이 나오고 있고 근거법률도 위치추적 수사의 방법과 기간 등에 따라 비례적으로 그에 맞는 제한이 차등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상자의 사생활의 보호 및 정보자기결정권 측면에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봄
 - 미국 연방대법원은 통신기기를 이용한 위치정보 수집은 수정헌법 제4조의 수색에 해당하여 영장 없이 법원의 허가에 의해 이루어진 수집행위는 위법수집증거라고 판시한 바 있음⁶⁾
 - 일본은 위치정보자료의 취득은 기지국으로부터 판명되는 위치정보의 내용을 오관의 작용에 의해 인식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의 '검증'에 해당되어 영장의 대상이 된다고 봄⁷⁾
 - 독일은 과학통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수사의 방법과 기간에 따라 허가요건을 차등화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음(제100조a 내지 100조h)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위치정보 추적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법제 및 판례 현황을 살펴보고, 위치정보를 활용한 수사에 대하여 보다 발전된 입법 방향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 위치정보 추적자료 관련한 현행 법률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검토하고 해외 입법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입법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위치정보 추적 자료 관련한 현행 수사 기법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완되어야 할지와 새로운 영장주의의 대상이 될 지에 대한 입법 및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II. 위치정보추적수사 현황

1. 위치정보추적수사 관련 법률

- 위치정보와 관련한 현행 법률은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등임
 - 휴대폰 등 전기통신기기를 사용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해 위치정보를 얻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고 GPS 위치정보의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이외 수사 방법의 일환으로 GPS 추적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음

가. 통신비밀보호법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에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정의를⁸⁾ 가목부터 사목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여

비스*라고 정의 내리고 있음. 이상경, 「정보통신기기의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헌법재판연구 제6권 제1호, 2019, 79면

6) Carpenter v. United States 585 U.S (2018)

7) 이현재, 「일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과 위치정보수사」, 『법학연구』 제60호, 2019, pp 237~264

8)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함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기에서 개인의 위치자료와 관련된 규정은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바목)와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 자료(사목)임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동법 제2조)를 제공요청할 수 있음⁹⁾
- 동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확인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¹⁰⁾
- 동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수사에 필요한 경우 요청가능하고 실시간 추적자료나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¹¹⁾를 요청하는 경우, 수사에 필요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통신비밀보호법」에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정보에 대한 수사는 기존의 필요성 외에 보충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음
 -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19년 11월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¹²⁾에 의해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나 위치정보 추적자료를 열람, 제출할 수 있게 한 규정에서 수사의 필요성 이외 다른 방법으로는 범죄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 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 보전이 어렵다는 등의 보충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임
 - 다만,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또는 전기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범죄에 대하여 실시간 위치정보 혹은 기지국 수사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보충성 없이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감청대상 특정 범죄에 대하여는 실시간 위치정보 수사의 경우에는 허가 요건으로 필요성만을 요구함
 - 기지국 수사의 경우에도 감청대상 범죄와 그 외 일부 통신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는 필요성만 있으면 보충성 없이 위치정보 허가를 요청할 수 있음
 -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든 범죄에 대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통신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9)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10)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1)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1. 제2조제11호바목·사목 중 실시간 추적자료 2.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12) 의안번호 2023981

[표 1] 통신비밀보호법 상 위치정보 허가의 요건

(단위: 내용)

위치정보 수사	특정범죄 외 기지국 수사	특정범죄 외 실시간 위치정보	특정범죄 기지국 수사	특정범죄 실시간 위치정보	모든 범죄 통신확인자료 (기지국 수사 및 실시간 위치정보 제외)
요건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보충성	보충성			

※ 자료: 「통신비밀보호법」을 해석하여 필자가 작성함

- 실무상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엑셀파일(Excel File)을 통해 요청한 기간 내의 통화일자, 통화시각, 통화시간, 발신 사이트 등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정보를 수신하게 됨
 - 위치추적정보는 통신 단말기에 가장 근접한 기지국과 통신 단말기 사이의 무선 통신을 위해 마련된 무선통신분할망의 위치를 나타내는 아이디(Location Label)를 의미함. 보통 3~5km 단위로 분할되어 있음¹³⁾

그림 11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신 자료의 예

No	No	구분	시화일자	시화시간	통화시간	발신번호	상대전화번호	카드번호	국가명	발신 SITE	비고
1		국내음성통화	2016.XX	10:17:29	0:07					양천구 신정7동 7690-1번지 금옥빌딩	
2		국내음성통화	2016.XX	22:01:01	3:50					강남구 역삼동 3701번지	
3		국내음성통화	2016.XX	15:04:01	2:12					강남구 역삼동 3701번지	
4		국내음성통화	2016.XX	18:00:12	0:56					강남구 역삼동 3703번지	
5		국내음성통화	2016.XX	16:01:01	7:09					서초구 서초2동 10-1번지	
6		국내음성통화	2016.XX	16:50:10	18:20					서초구 서초2동 10-1번지	
7		국내음성통화	2016.XX	12:00:12	0:15					양천구 신정7동 7690-1번지 금옥빌딩	
8		국내음성통화	2016.XX	18:02:11	16:02					양천구 신정7동 7690-2번지 금옥빌딩	
9		국내음성통화	2016.XX	18:01:00	23:00					강남구 논현동 103-10번지	
10		국내음성통화	2016.XX	8:02:15	8:05					강남구 논현동 103-10번지	
11		국내음성통화	2016.XX	23:03:50	0:04					강남구 논현동 103-12번지	
12		컬러메일 통화	2016.XX								컬러메일
13		컬러메일 통화	2016.XX								컬러메일
14		컬러메일 통화	2016.XX								컬러메일
15		컬러메일 통화	2016.XX								컬러메일
16		컬러메일 통화	2016.XX								컬러메일
17		컬러메일 통화	2016.XX								컬러메일
18		컬러메일 통화	2016.XX								컬러메일
19		컬러메일 통화	2016.XX								컬러메일

※ 자료: 실무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시 통신사업자에게 수신하게 되는 정보를 필자가 재구성한 것임

- 기소중지결정, 참고인증지 결정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신사실 확인 자료제공을 받은 사실, 제공요청기관 및 기간을 정보주체인 전기통신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조제1항)
- 다만 사유가 있을 경우 통지를 유예할 수 있는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사실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를 알려주도록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게 함(「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조제2항)

13) 일반적으로 4G 통신환경에서 통신기기의 정확한 위치는 발신 사이트(발신기지국 위치정보)로부터 오차범위가 50~300미터가 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나.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제106조 압수¹⁴⁾와 제109조 수색¹⁵⁾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에 해당될 경우, 검사가 영장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영장 발부여부를 판단함
- 그러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가 압수·수색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입법이 명확하지 않아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GPS 발신기를 부착하여 이를 이용하여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서는 「통신비밀법」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없어, 형사소송법 압수 및 수색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긴급구조에 한하여 경찰이 영장 청구 없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위치정보 수사의 근거법률로 활용되기 어려움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¹⁶⁾는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구조가 필요하거나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가 필요한 것을 의미함
- 긴급한 구조상황에서만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위치정보를 수사에서 활용함에 있어서는 근거 법률이 되지 못함

14) 제106조(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법원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5) 제109조(수색)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16) ②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따라 경찰관서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자(이하 "목적자"라 한다)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목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자신 또는 다른 사람 등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하 "구조받을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를 요청한 자의 개인위치정보
2. 구조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한 경우 구조받을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가 실종아동등에 대한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

2. 위치정보수집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중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2조 제11호 가목 내지 라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분이 영장주의에 반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본 규정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
- 헌법재판소는 관할하는 기지국을 이용하여 착·발신한 전화번호, 착·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발신 번호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행위(이하 ‘이 사건 기지국수사’)는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으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¹⁷⁾

가. 영장주의

-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영장이 아닌 허가만으로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을 하는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지는 않는다고 봄
 - 영장주의의 본질은 인적, 물적 독립을 보장받는 중립적인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것임
 - 따라서 영장제도를 거치지 않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통해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거친 것으로 보아 영장주의에는 반하지 않는다고 봄
 -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헌법 제12조제3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강제처분의 특수성, 그 강제처분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법 현실,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

나. 과잉입법금지 및 적법절차원칙

- 그러나 수사의 필요성만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이라는 강제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과잉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하여, 수사의 필요성 이외 보충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정보 주체자에게 통지하는 적법절차원칙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봄
 -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비록 비내용적 정보이지만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해 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유추해낼 수 있는 ①민감한 정보인 점, ②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요건을 필요성만으로 규정하여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대상 범위를 한정하거나 요건을 강화하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시함
 - 유괴·납치·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범죄와 같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범죄로 그 대상을 한정하는 방안 또는 범죄수사가 어려운 경우(보충성)를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함

17) 2018. 6. 28. 2012헌마538

Ⅲ. 위치정보추적수사 관련 쟁점사항

- 위치정보추적수사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 이때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정보 수집의 허가 요건과 방식을 구성해야 하고, 그 과정 및 절차에서 개인의 청문권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해야 함
- 본 장에서는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위치정보추적 수사 쟁점사항들을 ①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의 남용, ②기지국 수사의 폐해, ③통신사실확인자료의 장기간 수집 및 통지의무의 실효성으로 나누어 살펴봄

1.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의 남용

-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호 및 제13조의5에 따르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은 그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사용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
 - “이와 관련되는 범죄”라는 구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당해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¹⁸⁾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실무적으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데 압수의 대상의 경우 대상범죄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뿐만 아니라 그 대상자의 동종·유사의 범행도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판례가 있음¹⁹⁾
 -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있어서 “관련성”을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기준을 적용했을 시, 직접적으로 연관된 범죄사실에 한정하지 않고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 범행까지도 관련된다 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로 그 사용범위가 넓어질 수 있음
-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데, 허가도 법원의 판사에 의해 판단 대상이 되는 하나, 허가 여부 판단의 기준은 영장 발부 기준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 압수, 수색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215조를 통해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과 “피의 사건과의 관련성”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제108조)에 따르면 ① 피의자에게 범 죄혐의가 소명되어야 하고, ② 압수·수색의 필요성, ③ 사건과의 관련성, ④ 압수·수색 대상의 특정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허가 요건은 기지국 수사 또는 실시간 위치추적 수사를 제외하고는 수사의 필요성만 있으면 가능하고, 이때 대상 범죄도 제한이 없음²⁰⁾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에서도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음

18) 대법원 2017.1.15.선고 2016도13489 판결

19) 대법원 2009.7.23.선고 2009도2648판결

20) 독일의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에 있어서 대상범죄를 한정하고 있음

- 최근 5년간(2015~2020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율을 살펴보면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발부율이 평균 89%인 반면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시 법원의 허가율은 94%에 달함
 - 압수·수색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모두 법원의 중립적인 판사에 의한 결정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통신제한조치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율이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에 비하여 약 5%정도 높음

[표 1] 최근 5년간 압수수색영장 발부율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율

(단위: 건/%)

연도	압수·수색·검증 영장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발부건수	일부기각	기각	발부율	허가건수	일부기각	기각	허가율
2015	165,051	17,261	1,697	89.69%	68,468	3,384	885	94.13%
2016	168,290	18,543	1,727	89.25%	73,411	2,898	787	95.2%
2017	181,040	21,273	1,978	88.61%	69,853	3,276	723	94.58%
2018	219,829	28,218	2,673	87.67%	64,542	3,183	1,012	93.89%
2019	258,162	28,094	3,409	89.12%	64,077	2,905	1,322	93.8%
2020 4월까지	70,397	5,841	862	91.3%	14,622	546	288	94.6%

※ 자료: 사법통계 활용하여 필자가 작성함

-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목적의 제한을 둔 “관련성”을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사용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에 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허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압수, 수색 영장 발부율에 비하여 약 5%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판단 주체가 법원의 법관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제공요청 남용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
 - 허가 및 영장 모두 법원의 중립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지만 허가여부 판단의 기준이 영장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어 허용범위가 넓음
 - 미국의 경우 「통신법」(the stored Communication act) 제2703(d)조에 따라 법원의 명령에 의해 내려진 통신기록은 영장 없이 입수된 것으로 수정헌법 제4조에 반한다고 본 사례가 있음²¹⁾
 - 수정헌법 제4조는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동산의 안전을 보장받는 개인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함
 - 영장은 “상당한 이유”에 근거를 가지고 선서 또는 확약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수색될 장소, 체포될 사람 또는 압수될 물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는 발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원의 명령에 의해 내려진 통신기록은 수정헌법 제4조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위법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
 - 특정인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리라는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지 않은 법원의 허가는 영장주의에 위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음²²⁾

21) Carpenter v. United States 585 U.S (2018)

22) 김중현, 「영장주의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법재판연구원, 2019, pp50~51

2. 기지국 수사의 폐해

- 기지국 수사란 문서 1건을 통하여 특정한 피의자의 번호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건이나, 초동수사를 빠르게 수행하기 위하여 범죄 장소와 관련한 관할 기지국을 이용하여 착·발신한 전화번호, 착·발신 시간, 통화시간, 수·발신 번호 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행위를 말하는 것임
- 기지국 수사의 경우 한 번의 발부로 불특정 다수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사기관이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침해가 높음
 - 범죄가 발생한 주변 지역에서, 특정 시간대에 통화했다는 것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불특정 다수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고,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²³⁾
- 우리나라의 경우 기지국 수사가 다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비하여 개인정보 침해가 더 크다는 인식 하에 다른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요건인 필요성 이외에 보충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음
 - 헌법재판소는 기지국 수사로 인한 통신접속정보 수집은 민감한 정보인 점이고 수사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요건을 필요성만으로 규정하여 제대로 된 통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들어, 수사의 대상범위를 한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얻기 어려울 경우라는 보충성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여,²⁴⁾ 2019년 12월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된 바 있음
- 아래의 표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있어서 전화번호수와 문서수를 살펴보면, 기지국 수사의 현황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여전히 기지국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 <표2>에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를 살펴보면 자료 요청 주체자들의 대부분은 경찰로서 경찰에 의한(초동) 수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문서 1건당 전화번호수가 2015년 상반기 25.2건에서 2016년 상반기에 5.2건, 2017년 상반기 4.6건, 2018년 상반기 1.8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기지국 수사가 진행 중임을 시사하고 있음

23) 박찬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4호, 2014, p 210

24) 헌법재판소 2018.6.28. 선고 2012헌마191, 500(병합)

[표 2] 최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건수

(단위: 건/%)

연도	2015		2016		2017		2018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검찰	전화번호수	84,826	83,570	68,637	95,158	74,362	82,978	82,276	73,624
	문서수	33,210	30,944	24,725	34,802	30,072	32,544	31,990	29,605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6	2.7	2.8	2.7	2.5	2.5	2.6	2.5
경찰	전화번호수	37,07,327	1,597,667	686,104	729,041	643,925	241,313	228,874	162,985
	문서수	115,771	117,519	119,258	121,781	126,793	108,129	119,773	100,839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32.0	13.6	5.8	6.0	5.1	2.2	1.9	1.6
국정원	전화번호수	1,526	1,263	797	413	2,706	690	805	1,025
	문서수	524	457	221	203	367	334	370	345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9	2.8	3.6	2.0	7.4	2.1	2.2	3.0
기타 기관	전화번호수	5,520	3,246	2,952	2,552	3,289	3,632	2,565	2,937
	문서수	1,375	1,142	1,263	1,068	1,368	1,650	1,344	1,348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4.0	2.6	2.3	2.4	2.4	2.2	1.9	2.2
합계	전화번호수	3,799,199	1,685,746	758,490	827,164	724,284	328,613	314,520	240,571
	문서수	150,880	150,062	145,467	157,854	158,600	142,657	153,477	132,137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5.2	11.2	5.2	5.2	4.6	2.3	2.0	1.8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활용하여 필자가 재구성함

- 독일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00조g에 기지국 수사의 대상으로 중대범죄에 한정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보충성분만 아니라 사안에 따른 비례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제100조g1항 1문인 중대한 범죄여야만 기지국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제100조g(통신접속정보의 수집)제3항은 기지국 조회에 대한 규정으로 1) 필요성 2) 비례성, 3) 현저한 보충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3.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기간 및 통지의무

- 통신사실확인 자료 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범죄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이 가능함
 - 장기간의 위치정보추적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사생활에 대한 감시를 수행하는 것임
 - 이에 관련하여 독일은 통신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01조a 1항에 따라 기간을 분명히 명시해야 하고 24시간 끊임없이 지속되거나 2일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장기감시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63f조가 적용되어 기간 제한이 있음
 - 장기감시의 경우 영장이 필요하고,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필요한 경우 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²⁵⁾

-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지의무에 대한 제재조치도 없어, 통지에 대한 실효성이 없고 통지유예의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여 수사기관에서 이를 남용할 우려가 있음
 - 기소증지결정 또는 참고인증지결정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일을 기산점으로 통지기한 1년 내에 사후적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시, 제재조치가 없음
 -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규정을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통지의무는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별도의 벌칙규정이 없음
 - 통지유예의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데,²⁶⁾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재량권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알권리와 청문권을 침해할 수 있음
 - 통지유예의 사유 중 “공공의 안녕질서”의 경우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수사기관의 재량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음
 -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이라는 사유는 대부분의 사건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통지유예가 예외가 아닌 원칙규정으로 운용될 위험이 있음²⁷⁾

IV. 개선방안

1.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대한 통제

-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에 대한 허가의 요건이 영장에 비하여 완화된 점, 일반 영장에 비하여 발부율이 높다는 점,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 범위가 “관련성”이라는 요건의 해석에 의하여 확대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봄
- 이에 대한 통제로 ①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방안, ②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방법 및 시기에 따라 그 요건을 차등화하는 방안, ③GPS기 부착으로 인한 수사에 대한 규정 신설을 검토할 수 있음

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대상 범죄 한정

-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범죄의 경우에는 수사의 필요성만으로 가능하고, 이외의 범죄에 대하여도 수사의 필요성과 보충성이 있으면 허가를 해준다고 규정하고 있음

25) 김지은, 박원규, 「수사상 GPS위치추적기 활용을 위한 법적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2호, 2018, p105~106

26)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1.>

1.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7) 이훈재, 「독일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추적수사와 당사자에 대한 통보제도」, 『법조』 제68권 제4호, 2019, p 521

-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대상에 대하여 경미한 범죄이거나 통신과 관련이 없는 범죄에 대하여도 수사의 필요성, 보충성만으로 광범위하게 허가를 확대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지나친 침해가 가져올 수 있다고 보여짐
- 따라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수집 대상을 모든 범죄가 아니라, 중요범죄 혹은 통신과 관련된 범죄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 독일의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더라도 감청대상인 특정범죄에 해당하거나 통신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해준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따른 요건의 차등화

- 수사기관이 위치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기지국 수사 및 실시간 위치정보 외에도 위치정보 수집 방법 및 과거, 장래의 위치정보에 대하여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의 침해 정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요건을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개선책이 요구됨
 -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기기를 이용한 위치정보 수집에 있어서,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정보 수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사의 필요성만으로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및 장래의 위치정보 수사에 대해서도 그 수사방법 및 기간 등에 따라 비례적으로 요건을 차등화하고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 영장의 대상으로 규율하여 보다 엄격하게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음
- 독일은 「형사소송법」에 위치추적 수사와 관련된 규정들을 아래와 같이 규율하고 있음
 - 기지국 수사, GPS 장치를 이용한 위치추적 수사, 이동통신기기 위치수집, 통신접속정보의 수집 등 다양한 형태의 위치정보 수집에 대하여 대상범죄와 요건, 대상자를 차등화 시켜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을 통해 인격에 침해를 야기하는 개별적인 처분의 법적 근거를 합헌적으로 형성하기 위해 독일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규정들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음
 - 과거 위치정보의 수집 정보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00g조 제3항에 따라 “특별히 중대한 범죄”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래의 위치정보 수집의 경우 ①통신감청대상 범죄에 준하는 범죄이어야 하고 ②사실관계의 조사나 피의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요건을 엄격히 하고 있음
-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위치추적과 관련하여 법원의 허가가 아닌 영장의 대상으로 보아, 보다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 위치추적수사의 방법 및 기간에 따라 현행 허가가 아닌 영장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함
 - 미국은 수정헌법 제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영장이 필요한 강제처분이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함²⁸⁾
 - 일본은 이에 대하여 압수, 수색이 아닌 “검증”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장의 대상이 된다고 봄

28) Carpenter v. United States No. 16-402, 585 U.S (2018)

- 위치정보자료의 취득은 통신 회사의 시스템 단말기를 조작하여 통신기기로부터 발신된 전파를 수신한 기지국으로부터 판명되는 위치정보의 내용을 오관의 작용에 의해 인식하는 것으로 보아 「형사소송법」의 '검증'에 해당된다고 봄²⁹⁾

다. GPS기 부착으로 인한 수사에 대한 규정 신설

- 피의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를 이용한 위치추적 수사가 아닌 GPS기를 피의자 혹은 피의자의 차량 등에 부착하여 위치를 추적하는 하는 수사방법은 부착 자체가 물리적 침입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법률이 필요함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인 GPS기를 부착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용이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의 적용을 받게 됨
 - 압수·수색과 별개의 강제처분으로 규정하여, 이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할지, 아니면 「통신비밀보호법」 혹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입법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GPS기를 부착하여 수사하는 행위에 대한 근거 법률이나 판례를 통한 법리를 개발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GPS기를 피의자의 차에 부착하여 수사한 행위에 대하여 정보 수집의 목적으로 물리적으로 침입한 것은 수정헌법 제4조의 수색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장이 필요하다고 봄³⁰⁾
 - 독일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00조h에는 주거 공간 밖에서 하는 추가조치로서 피범행혐의자의 경우에만 대상자의 감시 목적을 위하여 정해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조 제2항에는 피범행혐의자 아닌 사람에 대한 감시목적을 위하여 정해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는 행위는 사실관계의 조사 또는 피범행혐의자 소재의 파악이 다른 방법으로는 성공할 가망이 거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규정함³¹⁾

2. 기지국 수사 통제로서 GPS정보를 활용하는 방안

- 기지국 수사의 경우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 이외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문서 1건으로 수집한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에 개인의 사생활이 무분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지국 수사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었으나, 임기만으로 폐기된 바 있음
 -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시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외에 반드시 해당 가입자의 인적사항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요청을 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³²⁾이 2012년 10월 22일 전병헌 의원 대표로 발의된 바 있음

29) 이훈재, 「일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과 위치정보수사」, 『법학연구』 제60호, 2019, pp 237~264

30) United States v. Jones 565 U.S 400, 132 S. Ct. 945, 953 (2012); 김종구, 「GPS추적장치를 이용한 수사의 적법성-미연방대법원 판례의 변천과 관련하여-」, 『법학논총』 제34권, 2015 참고

31) 독일 형사소송법, 독일법연구회(번역), 사법발전재단, 2017

32) 의안번호 1902244

- 범죄 관련성이 있는 자 이외의 다수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기지국 수사는 통신비밀 및 사생활 침해가 크다는 점에서 현행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범위 내에 GPS정보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
 -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정보는 현재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되는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정보와 구별되는 것으로 휴대용 개인 단말기의 위치추적을 하는 방식을 의미함
 - 종래의 기지국을 이용한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비하여 주변 5m까지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 특정 기지국, 특정 시간대에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통신사실확인자료로 제공받는 기지국 수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그러나 개인의 근접 5m까지 세밀하게 추적이 가능하여 수사대상자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추적되거나 공개될 우려가 있고 개인의 인권 침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입장도 있음
- 기지국 수사의 폐해를 방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통신기기의 GPS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그 대상과 요건을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위치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이 있으나, 수사 대상자의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요건을 다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비하여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GPS정보 수집이 가능한 대상범죄는 유괴·납치, 아동 및 여성 성폭력범죄 등 강력범죄, 국가안보 위협하는 각종범죄 등에 한하여 한정하고, 수사의 필요성 및 보충성을 요건으로 동시에, 수집 기간을 제한하고 이후 정보 폐기하는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음
 - 「형사소송법」의 압수·수색 영장과 같이 새로운 영장의 대상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고³³⁾ 이를 「형사소송법」에 규정할지, 개별 법률에 규정할 지도 논의되어야 함
 - 미국 연방대법원은 2018년 Carpenter v. U.S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휴대폰의 과거 셀 사이트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4조의 대상으로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³⁴⁾
 - 일본은 2017년 최고재판소 판결에서 GPS수사는 강제처분에 해당하며, 검증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검증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새로운 적합한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적한 바 있어, 이에 대하여 새로운 영장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입법이 될 가능성이 있음
 - 기술발전에 따른 강제처분들이 각 기술 전문분야에 따라 개별법률³⁵⁾에 규율할지, 독일과 같이 형사소송법에 일원화할지에 대해서도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임

33) 김중규, 「영장주의의 새로운 영역」,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자료집』, 2019

34) Carpenter v. United States, No. 16-402, 585 U.S (2018): 본 사건 이전에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사의 관련성을 소명하고 법원의 공개명령을 얻어 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의 위치 기록을 수집할 수 있어서, 우리나라의 허가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

35) 우리나라의 경우 수사, 압수, 수색에 대한 일반규정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강제처분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추적 정보 관련법 등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3. 통신사실확인자료 기간 및 통지의무 관련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기간 제한을 두어, 그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 통제 조항을 입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통지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통지유예 사유를 명확히 하고 의무 위반 시, 벌칙조항을 둘 필요가 있음³⁶⁾
 -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³⁷⁾
 - 통지유예의 사유를 넓게 규정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재량권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알권리와 청문권을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통지유예 사유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V. 결론

- 새로운 과학적 수사방법의 하나로 위치추적수사방법이 등장하면서 범죄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졌으나, 대상자의 통신 및 사생활의 자유와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함
 - 위치추적수사방법 및 기간에 따라 대상자의 기본권의 침해가 다르기 때문에, 침해정도에 비례하도록 통신사실확인자료수집의 허가 요건을 갖추고, 집행 절차에 있어서 적법절차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함
- 위치추적 수사와 관련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수집의 남용, 기지국 수사의 폐해, 장기간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및 통지의무 유예의 남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해보임
 - 위치추적을 비롯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기 때문에 위치추적 방법 및 기간에 따라 요건을 차등화하는 것이 필요함
 - GPS기기를 따로 부착하여 위치추적을 하는 수사방법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영장의 새로운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함
 - 기지국 수사의 폐해로 인하여 GPS정보를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섭시키되, 이에 대하여 엄격한 요건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의 기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기간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제한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의무를 보다 실질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36) 박찬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2014.

37) 2010.9.13.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09324

참고문헌

- */ 김중구, 「영장주의의 새로운 영역」, 『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자료집』, 2019
- */ 김중구, 「GPS추적장치를 이용한 수사의 적법성-미연방대법원 판례의 변천과 관련하여-」, 『법학논총』제34권, 2015
- */ 김종현, 「영장주의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법재판연구원, 2019
- */ 김지은, 박원규, 「수사상 GPS위치추적기 활용을 위한 법적연구」, 『한국치안행정 논집』 제15권 제2호, 2018
- */ 박찬걸,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44호, 2014,
- */ 이상경, 「정보통신기기의 위치추적에 대한 헌법적 통제에 관한 소고」, 『헌법재판 연구』,제6권 제1호, 2019
- */ 이훈재, 「일본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감청과 위치정보수사」, 『법학연구』제60호, 2019
- */ 이훈재, 「독일의 휴대전화 위치정보추적수사와 당사자에 대한 통보제도」, 『법조』 제68권 제4호, 2019

R E P O R T · L I S T

NARS 현안분석 발간 일람

호수	제목	발간일	집필진
제145호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동향과 군사안보적 함의	2020.6.9.	형혁규
제144호	제20대 국회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 현황 및 쟁점	2020.6.4.	김여라
제143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 민식이법을 중심으로-	2020.6.4.	박준환
제142호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 및 향후 과제	2020.6.3.	조서연
제141호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 경과 및 향후과제	2020.5.30.	김진수
제140호	전기저장시스템(ESS) 보급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0.5.30.	유재국
제139호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촉진세제 개선과제	2020.5.30.	문은희
제138호	금융 산업 구조 측면에서의 디지털금융 혁신의 동향과 향후과제	2020.5.30.	조영은
제137호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과제	2020.5.29.	노성준
제136호	보험설계사의 고지(告知)의무 수령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	2020.5.27.	김창호
제135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및 개선과제	2020.5.19.	최병근
제134호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	2020.5.4.	허민숙
제133호	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과제	2020.4.28.	김예성
제132호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사업 경영 현황과 향후 과제	2020.4.7.	정준화
제131호	자치경찰 도입의 쟁점과 방향	2020.4.3.	최미경
제130호	장애인 소득보장 급여수준의 현황과 개선방향	2020.4.2.	박진우
제129호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0.4.1	김경민
제128호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공개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2020.3.30.	조규범 이재영 배정훈
제127호	적합성평가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20.3.30.	김종규
제126호	농축수산물 생산단계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20.3.25.	장영주

제146호

NARS

현안분석

위치정보추적수사
현황과 개선방안

